

제801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

- 안 건 명 :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(도시계획, 교통분야)
- 심 사 일 : 2013. 8. 8.
- 사업개요
 - 용역비 : 37,892천원
 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6개월
 - 사업규모 : 마천지구 임대주택단지 217,750㎡
- 심사결과 : 적 정(조건부)

심사항목	심사내용
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미대상	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(2공구)에 대하여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, 사업준공을 위한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 및 준공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조사설계(기본계획 변경, 지구단위계획 변경,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신고) 용역으로 용역시행 필요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[용역비 조정 : 37,892천원 → 31,053천원 (감 6,839천원, 용역비 대비 -18.04%)] [심사내역] ○ 조사설계용역(기본계획, 지구단위계획) - 용역비 조정 : 25,292천원→20,372천원(감4,920천원, -19.4%) - 보조원 등급조정 : 중급→초급(141,106원 →107,668원) - 제경비 효율조정 : 120% → 110% - 기술료 효율조정 : 30% → 20% ○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(변경) - 용역비 조정 : 12,600천원→10,681천원(감1,919천원, -15.2%) - 기술자 업무소요 불필요항목 제외(발주처 자료제공) (1-가. 사업의 개요, -나. 교통영향분석,개선대책수립 사유 및 수립시기의 적정성, - 다.교통영향분석, 개선대책수립범위 3개항목 적용제외) - 보조원(중급기능사) 적용제외
3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본 용역의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 대가를 적용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
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비·중요인의 관리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책 적정성	적정